

의안번호	2206966
의 퇴 인	송재봉 의원
회 답 일	2025. 3. 10.
추계번호	24F6310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첨단산업 인재인력 개발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등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0조제1항(연구·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)	○ 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첨단산업 인재 인력개발비에 대한 공제를 신설 － 공제대상: 수도권 외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첨단산업 기업이 첨단산업인재의 양성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－ 공제율(%):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20 － 적용기한: 2029.12.31.	
2	안 제63조의4(첨단산업인재에 대한 소득세 감면)	○ 첨단산업 인재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신설 － 공제대상: 수도권 외 지역의 첨단산업 기업에 종사하는 첨단산업인재의 근로소득 － 공제율(%): 70 － 적용기한: 취업일로부터 5년	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0조제1항 (연구·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63조의4 (첨단산업인재에 대한 소득세 감면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에 따라 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(이하 'R&D 세액공제')에서 첨단산업 인재 인력개발비에 대하여 별도로 구분하여 세액공제하고, 첨단산업 인재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신설할 경우, 소득세 및 법인세수의 감소

가 예상됨(안 제10조제1항 및 제63조의4)

- 안 제10조제1항은 현행 일반, 신성장·원천기술, 국가전략기술로 구분되어 공제율이 차등적으로 적용되는 R&D 세액공제에 첨단산업 인재 인력개발비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세액공제를 적용
 - 공제대상: 수도권 밖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위치한 첨단산업 관련 기업이 첨단산업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첨단산업 인재 인력개발비
 - ※ 첨단산업: 기존 산업을 혁신하거나 새로운 사회적·경제적 가치가 있어 시장성, 파급효과, 성장 잠재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(「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」 제2조제1호)
 - ※ 첨단산업 인재: 첨단산업 분야에서 국가 및 지역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지식·기술·역량 및 태도 등 능력과 품성을 갖춘 사람(「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」 제2조제2호)
 - 공제율: 현행 R&D 세액공제에 추가로 20%
 - 적용기한: 2029.12.31.

[표 1] 현행 R&D 세액공제 기업규모별·기술별 공제율

(단위: %)

	일반	신성장·원천기술	국가전략기술
중소기업	25	30~40	40~50
중견기업 ¹⁾	8~20	20~35	30~45
대기업	최대 2	20~30	30~40

주: 1) 중견기업의 공제율 범위는 중소기업에서 전환된 이후 일정기간 동안 적용되는 우대공제율을 포함

- 안 제63조는 수도권 밖에 위치한 첨단산업 관련 기업에 취업한 첨단산업 인재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신설
 - 공제대상: 수도권 밖에 위치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첨단산업 관련 기업에 취업하는 첨단산업 인재의 근로소득
 - 공제율: 70%
 - 적용기한: 취업일로부터 5년
-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향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제대상인 첨단산업 인재 인력개발비 및 첨단산업 인재의 근로소득

등을 추정하여야 하나, 구체적인 규정사항의 시행령 위임 및 추정의 근거가 되는 자료의 부재 등으로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음

- 개정안에 따라 세액공제의 대상으로 추가되는 첨단산업 인재 인력개발비와 첨단산업 인재의 근로소득의 경우, 구체적인 포함 범위가 시행령 등에 위임되어 있어 현 시점에서 공제대상을 특정할 수 없음
 - 개정안의 공제대상인 첨단산업 인재 인력개발비 및 첨단산업 인재의 근로소득을 구분하는데 필요한 인력개발비의 산출방식, 첨단산업 인재에 대한 정의 등이 시행령에 위임하여 규정되어 있어 현 시점에서 특정할 수 없음
- 또한, 향후 첨단산업 분야의 인력개발을 위한 R&D 비용 및 근로소득에 대한 정보의 추정이 필요하나, 해당 분야에 대한 과세정보가 부재하여 개정안에 따른 공제발생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음
 - 현행 「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」상 첨단기술은 반도체, 디스플레이, 이차전지, 바이오 등 4개 분야로 「조세특례제한법」상 국가전략기술로 분류되고 있으나, 양 법상 세부분야의 범위가 일치하지 않음
 - 또한, 국세청에 확인 결과,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R&D 세액공제의 실적 구분은 가능하나, 해당 분야의 세부적인 분야별 공제실적이 구분되지 않음

[표 1] 첨단기술과 국가전략기술의 반도체 등 분야별 세부기술

	첨단기술 (「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」)	국가전략기술 (「조세특례제한법」)
반도체	16nm 이하급 D램 및 128단 이상 낸드 플래시 메모리 설계 제조기술 등 8개	15nm 이하급 D램 및 170단 이상 낸드 플래시 메모리 설계 제조기술 등 23개
디스플레이	AMOLED 패널 설계 제조 공정 구동 기술(모듈 공정기술 제외) 등 4개	AMOLED 패널 설계 제조 공정 구동 기술(모듈 공정기술 포함) 등 8개
이차전지	에너지밀도가 배터리 형태별로 252~280Wh/kg 이상인 고에너지밀도 리튬이차전지 설계, 제조기술 등 3개	에너지밀도가 배터리 형태별로 265Wh/kg 이상인 고에너지밀도 리튬 이차전지 설계, 제조기술 등 10개
바이오	바이오의약품을 개발하고 제조하는데 적용되는 동물세포 배양 정제기술 등 2개	바이오 신약 후보물질 발굴 및 제조기술 등 8개

주: 첨단기술의 경우, 현재 로봇 및 방위산업을 포함하는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중(2025.3.4.)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박정환	백경엽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정환	02-6788-4835	jhpark83@assembly.go.kr